

1992 년도 지방토론회 (대구편)

정보화 사회의 언론과 언론중재

성낙영

중재위원 · 영남대 법대 교수

현대사회가 날로 산업화 · 정보화해감에 따라 정보는 질적 ·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열린, 개방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곧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유를 통해서 국민의 살아있는 여론을 형성하고 또 여론이 국가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요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현실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음에 비추어 자유언론의 창달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될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성의 원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이나 이에 비례하여 언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언론보도가 공정하고 투명(transparency)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 · 행정 사법에 이어 권력의 제사부라고도 일컫는 언론의 중요성에비추어 공적 기능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언론의 자유 보장은 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한 기본 전제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것은 곧 언론자유 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야기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헌법 제 21 조 제 4 항)」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 제재수단의 제도화에도 귀결된다. 여기에 언론중재제도의 현실적 정착과 그 제도적 보완이 의미를 갖게 된다.

헌법 제 24 조 제 4 항은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 포함할 수 없으며 음란문서의 제작이나 판매 등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사죄광고, ③ 사전유지, ④ 반론권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사죄 광고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향후 판결문 게재의 방법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줄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중재 1992. 봄호」 참조). 결국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법원의 정식재판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면 반론권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침해된 명예나 권리의 회복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바, 현행법하에서는 언론중재제도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이래 언론도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고, 취재원이나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려는 신중한 태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한 대부분의 경우 수송수행 자력이 부족한 일반국민이며 이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위 악법이라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언론중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오히려 새 정간물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보완을 행하였으나 역시 언론중재제도의 소극적 성격을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용어상 중재(arbitration, arbitrage)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중재기능에 부합한 중재기능 즉 일방적 · 강제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 주는 조정기능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조정기능에 법률상 중재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정당한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제도를 입법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① 강제중재권 부여, ② 손해배상명령제도의 도입, ③ 정정보도신청과 더불어 중재신청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신청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언론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늘날 일반적인 독립적인 기관 · 준사법적인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의 위상적립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언론 옴부즈만제도로서의 위상 재정립도 심의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현대적 역할과 기능은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생활에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언론의 창달은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존재가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건전한국민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음은 특별히 부연할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 언론이 보도기능에만 집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언론도 좀더 정성을 기울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국민의 인격발현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여 최근에 자체적인 언론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언론기관도 언론중재제도의 참뜻을 인식하여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란」 등을 과감히 도입하는 지혜가 요망된다.